발전기금관리규정

최초제정일: 2004. 9. 23. 최근개정일: 2019. 9. 19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세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(이하 "기금 "이라 한다)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의 기금은 자산의 형태 또는 종류에 따라 현금 등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도서, 유물, 골동품고서화 등의 문화재, 실험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을 포함해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일컫는다.

제3조(기금의 종류)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일반발전기금: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 및 집행기관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
- 2. 지정발전기금: 기부자가 장학금,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거나 특정 대학(원), 학부(과, 전공) 등 그 집행기관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
- 3. 수증물품: 기부자가 도서자료, 골동품, 고서화 등의 문화재, 실험기자재 ,유가증권, 용역 등 교육용 물품을 기증한 물품
- 4. 부동산: 기부자가 교육용 또는 수익용으로 기증한 부동산

제2장 발전기금조성위원회

- 제4조(위원회의 설치)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1. 기금의 관리 및 조성계획
 - 2.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
 - 3.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
 - 4.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
 - 5.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
 - 6.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
 -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- 1. 기부자가 특정 용도를 지정한 기금을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경우
 - 2.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가 장학기금일 경우
 - 3. 지정발전기금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

제5조(구성 및 운영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학부의

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(개정 2016.4.12.)

- ②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법인사무국장, 발전기금 기부자, 동문, 학부모, 발전기금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③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8.8.29.)
-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.
- ⑥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**제6조(회의)** ①회의는 총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-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 회의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

- 제7조(기금의 사용) ①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(이하 "수익금"이라 한다)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, 기자재의 확충, 학생 장학금, 우수교원 초빙, 우수학생 유치, 교육과정 개발, 교원의 연구비,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본교의 교육연구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특정 대학(원) 또는 학부(과, 전공)에 기부한 기금은 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대학(원) 또는 학부(과, 전공)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제8조(기금관리운용계획) 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9조(제반경비)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공헌자 인센티브는 교비로 충당하며 대학지원본부는 매년도 일정액의 제반경비를 책정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4.12.)
- 제10조(공헌자 인센티브) 학교는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(격려금, 인사고과 반영)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 정한다.
 - 1. 대상 : 본교 교직원 (신설 2019.09.19)
 - 2. 지급액: 총액 300만원 이상(1년간)이며, 발전기금 총액의 3~5%를 인센티브로 지급(목적성 지정기부금은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 유·무를 정한다.) (신설 2019.09.1 9)
 - 3. 기금이 현물일 경우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인센티브를 정한다. (신설 2019.09.19)
- 제11조(회계처리) ①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 - ②커뮤니케이션팀은 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.4.12., 2018.8.29)
- 제12조(기금관리운용의 감독 등) ①기금 및 수익금의 관리운용사용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커뮤니케이션팀은 기금에 관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 016.4.12., 2018.8.29)

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

- 제13조(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등) ①총장은 기금출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.
 - 1.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
 - 2. 본교 주요 행사에의 초청
 - 3. 기금출연자의 이름 또는 아호를 새긴 기념물의 설치
 - 4. 기타 기금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등
 - ②위원회는 제1항의 세부사항 이외의 예우를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예우내용을 제안서로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 - ③커뮤니케이션팀은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예우 내용 및 기금출연자의 기금 규모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예우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4.12., 2018.8.29)

제5장 주관부서

제14조(주관부서) 발전기금의 관리운영,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주관한다.(개정 2016.4.12., 2018.8.29)

제6장 보 칙

제15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